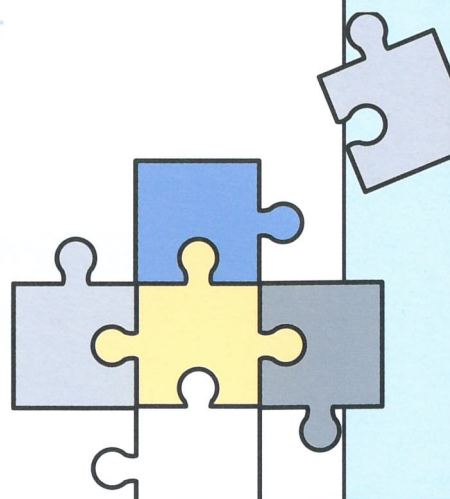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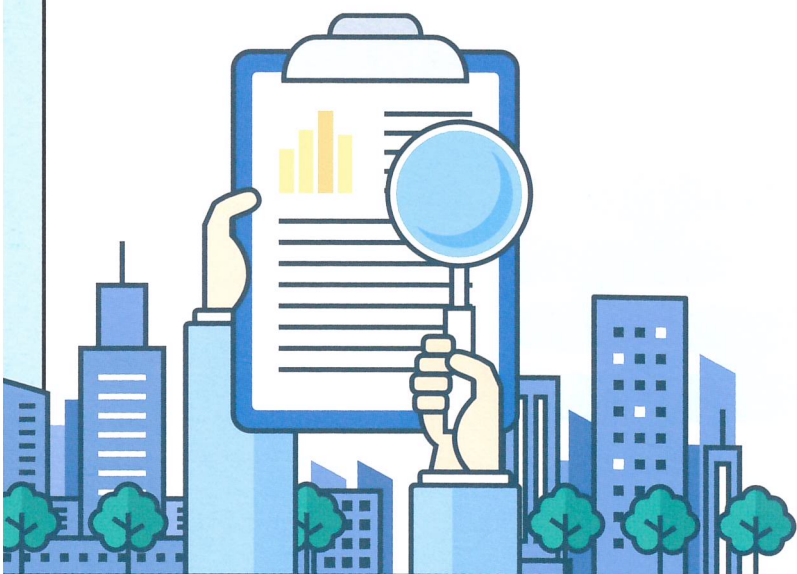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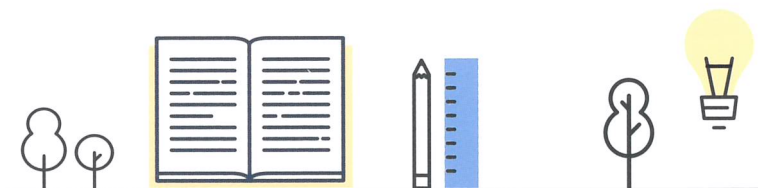


지역·지방인재 채용제도 안내



목 차

I.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개요	02
II. 지역인재 7급 추천요건 및 원서접수 방법	03
III.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역인재)	04
IV.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제도 개요	09
V.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방인재)	10
VI. 지역·지방인재 현황	11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개요

추진 배경

-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 · 운영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지역인재의 추천채용 및 수습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인재의 추천채용), 균형인사지침

주요 내용

-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수습직원으로 선발, 일정기간 수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구 분	지역인재 7급
대 상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추 천 인 원	• 학교당 최대 10명
성 적 요 건	• 학과성적 상위 10%이내 • 영어 · 한국사 기준점수(등급) 이내
필 기 시 험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헌법(PASS/FAIL, 60점 이상)
지 역 별 균 형 합 격	• 특정 시 · 도 합격자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수 습 기 간	• 1년
임 용 방 법	• 근무성적평가(2회) 후 임용

선발 절차

- 학교장 추천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부처 수습근무(1년)
→ 임용여부 심사 →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 필기 · 면접시험에서 특정 시 · 도의 합격자가 10%를 넘지 않도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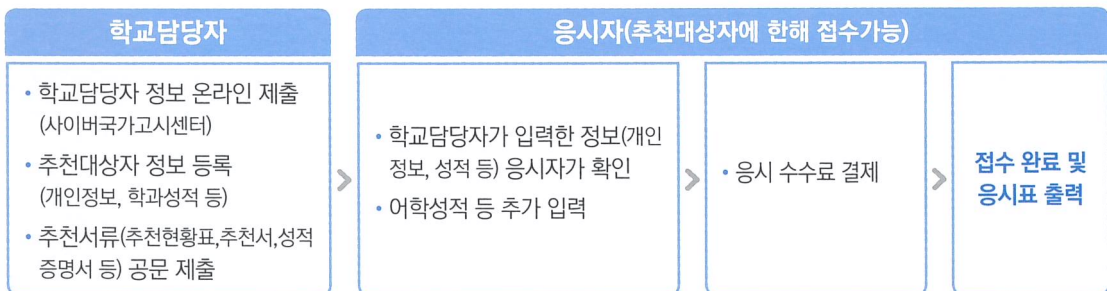
지역인재 7급 추천요건 및 원서접수 방법

추천 요건

구 분	내 용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면접시험이 2020.5.25. 경우에는 2017.5.25.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계절 학기는 정규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학과성적	•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 하여야 함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 기준점수<table><tr><th rowspan="2">시험 종류</th><th colspan="2">TOEFL</th><th rowspan="2">TOEIC</th><th rowspan="2">TEPS (18.5.12. 이전 시험)</th><th rowspan="2">TEPS (18.5.12. 이후 시험)</th><th rowspan="2">G-TELP</th><th rowspan="2">FLEX</th></tr><tr><th>PBT</th><th>IBT</th></tr><tr><td>기준 점수</td><td>530점</td><td>71점</td><td>700점</td><td>625점</td><td>340점</td><td>65점 (Level 2)</td><td>625점</td></tr></table> •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전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2020년 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시험 종류	TOEFL		TOEIC	TEPS (18.5.12. 이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 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시험 종류	TOEFL		TOEIC	TEPS (18.5.12. 이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기준 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2급 이상인 자 •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전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2020년 시험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원서접수 방법(2020년도 적용예정)

- 현재 학교 담당자가 1개의 ID로 추천 대상자를 일괄 접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개인별 응시표 출력, 성적 확인 등)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역인재)



추천 요건

Q. 추천 가능한 학교는 어떠한 학교들이 있나요?

- A.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이 가능하며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에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는 특수목적 대학(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은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Q. 편입한 학생입니다. 편입생도 해당 학교에서 추천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합니다.(계절학기는 학기에 미포함) 성적 또한 편입한 학교의 성적만이 반영됩니다.

Q. 선발시험에 합격 후 다음연도 수습시작 전까지 졸업을 못할 시에 합격이 취소되나요?

- A. 그렇습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Q. 추천 요건 중 성적이 10% 이내인 자로 되어 있던데 석차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 A.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심사일 기준 본인의 총 평점평균이 10% 이내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추천 기준 등 자체 선발 계획 수립 시 석차 계산 방식(모수인원 등)을 추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성적증명서에 석차가 전산으로 기재되는 학교는 해당 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나 전산으로 석차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관련 부서 담당자 또는 추천 담당자가 수기로 석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역인재)

Q. 지역인재 수습직원 추천 시 지원이 불가능한 학과도 있나요?

- A.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현재 분야별(행정, 기술)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은 행정직군, 이공계열은 기술직군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이공계로 분류되어 있는 경제·사회계열 학과와 예체능계열학과, 사범계열학과와 전공자의 경우 행정직군으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학과는 없습니다. 다만 응시분야와 전공학과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명백하게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건축학과 졸업(예정)자를 행정직군 추천시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할 수 있음.

선발 시험

Q.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어떤 과목으로 평가하나요?

- A. 인사혁신처 예규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필기시험의 과목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환판단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시험문제/정답 메뉴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Q. 서류전형에서도 탈락할 수가 있나요?

- A. 서류전형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적격 여부(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만을 판정합니다. 총족 여부만을 검증하는 것이며 별도로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으며 추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불합격 처리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역인재)



합격자 결정

- Q. 지역인재 7급 합격자 결정시 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A.**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합격자 결정시에는 지역균형 합격 방식을 적용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 분야에서 100명을 선발 예정 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10명까지 선발이 되도록 합격자를 조정합니다.



부처 배정

- Q. 부처 배정 시 희망한 부처로 배정이 되나요?**
- A.**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결원,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수습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절히 배정됩니다. 수습예정자는 수요가 확정된 부처에 3순위까지 지망이 가능하며 각 부처별 기준에 따라 적합한 인재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매칭작업이 진행됩니다.
- Q.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수 있나요? 다른 곳으로 발령 시에는 관사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이 전국에 소재하고 있어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관사 지원 여부는 각 부처마다 관사 시설 유무 및 지원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최종 근무지 결정시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Q. 근무지는 학교 소재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인가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소재지 지역구분은 합격자 결정시에만 활용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역인재)

수습 근무

Q. 수습기간 동안의 수습직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 A. 수습직원은 아직 공무원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Q. 수습 근무 도중에 부처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 A. 수습직원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수습근무를 하고 해당 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수습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근무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A. 수습직원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2회로 나누어 평가하며, 1회는 수습기관에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회는 수습근무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때의 평가 결과는 1년간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됩니다.

Q. 수습근무 후 임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수습부처에서는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①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 ②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책임감 및 성실성
- ③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 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
- ④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III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역인재)

Q. 수습근무 도중 학업을 위하여 유예가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수습근무 도중 몸이 아파 병가를 5개월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습근무가 연장이 되나요?

- A. 수습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수습기간의 1/3이상 공무상 병가를 허가해야 하는 경우 수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기술 자격증 등이 있으면 기술수당이 지급 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습직원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수습직원은 균형인사지침에 기재된 봉급 및 수당만 지급 가능하나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등(ex. 출장여비)도 별도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산출기초	봉급 (7급 1호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공무원 임용

Q. 기술분야로 합격하여 기술직렬로 수습근무를 하였으나, 임용 시에 행정직렬로 임용이 가능한가요?

- A. 임용 시에는 수습근무 시에 근무하였던 직렬로 임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군 변경(행정→기술)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제도 개요

추진 배경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서울-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학교 육성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우수한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균형인사지침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 (지방대학의 육성 등)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주요 내용

-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제한적인 비율로 추가 선발
-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 · 중퇴하거나 재학 · 휴학 중인 자

구 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7급 공채
목 표	• 선발예정인원의 20%	• 선발예정인원의 30%
적 용 단 위	•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	좌 동
추 가 합 격 선	• 1차(PSAT) -3점 2차(논술) -2점	• 필기시험 -2점
추가합격 상한	•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 ※ 1차(PSAT)시험은 추가합격 상한 없음	•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
시 행	• (1차) '07년 ~ '11년 (2차) '12년 ~ '16년 (3차) '17년 ~ '22년	• '15년 ~ '19년



자주 물어보는 질문(지방인재)

Q.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신청을 언제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 A. 응시원서 접수 시에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인의 최종학력 사항을 입력하시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졸업(재학)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인사혁신처 제1차 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입력하신 정보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Q.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 A.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나,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9.1월 기준,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는 연세대학교(원주), 한양대학교(안산), 건국대학교(충주), 고려대학교(세종), 동국대학교(경주)입니다.

Q.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줍니까?

- A.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들에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긴 하나,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 어떤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까?

- A.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된다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후순위로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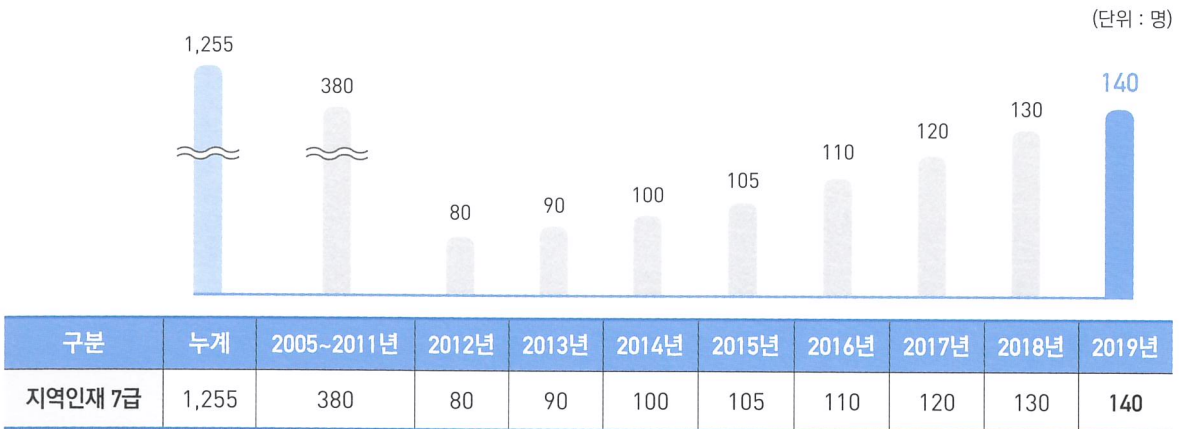
Q. 현재는 5급 공채와 7급 공채시험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적용 방식이 다른가요?

- A. 목표제의 취지, 적용방법 등은 동일하나 7급 공채의 지방인재 목표인원은 “합격예정인원의 30%(5급은 20%)”이고 추가합격 상한은 “합격예정인원의 5%(5급은 10%)이며 하한 성적은 “합격선(-2점)(5급 1차 : 합격선 -3점 / 2차 : 합격선 -2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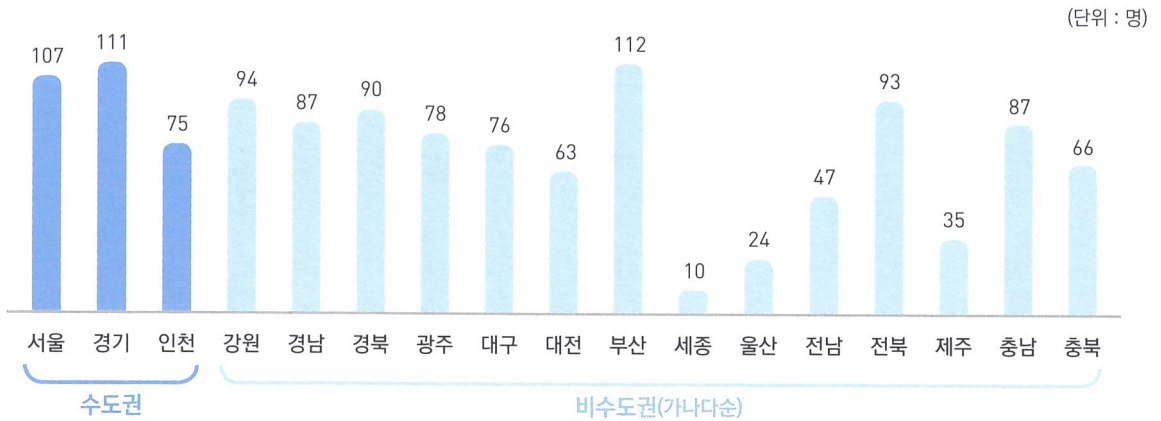
지역·지방인재 현황

지역인재

연도별 지역인재 선발인원



지역별 지역인재 선발인원 누계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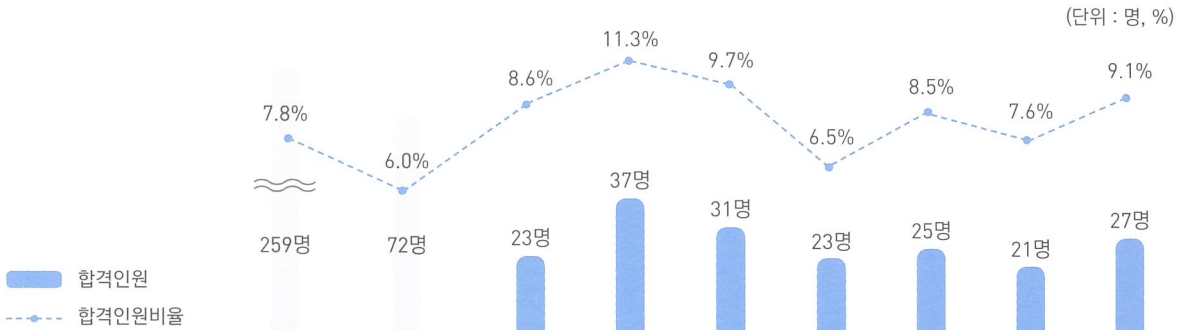
구분	합 계	수도권			비수도권(가나다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7급('05 ~ '19)	1,255	107	111	75	94	87	90	78	76	63	112	10	24	47	93	35	87	66

※ 1개 시도별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음

지역·지방인재 현황

지방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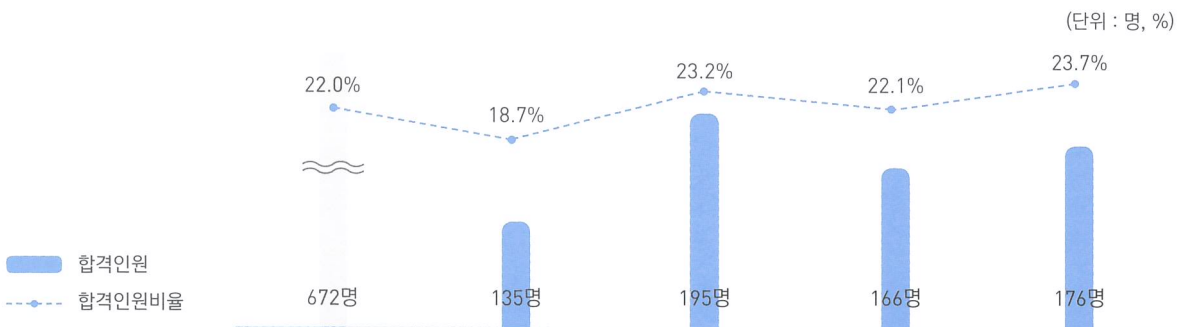
■ 지방인재 선발 현황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2012~2018)



구분	누계	2007~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합격인원*	3,324	1,197	266	325	317	353	293	277	296
지방인재 합격인원 (비율)	259 (7.8)	72 (6.0)	23 (8.6)	37 (11.3)	31 (9.7)	23 (6.5)	25 (8.5)	21 (7.6)	27 (9.1)
당초합격	166	57	14	26	22	6	13	13	15
추가합격	93	15	9	11	9	17	12	8	12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시험단위(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 지역구분 모집 제외) 합격인원

■ 지방인재 선발 현황 (7급 공채, 2015~2018)



구분	누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합격인원*	3,056	721	840	752	743
지방인재 합격인원 (비율)	672 (22.0)	135 (18.7)	195 (23.2)	166 (22.1)	176 (23.7)
당초합격	599	112	171	157	159
추가합격	73	23	24	9	17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시험단위(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 합격인원